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4.3.12(수) 15:00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황규철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5일

3. 제안 이유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행 사업(안 제3조)

나. 관리·운영 위탁, 수탁자 의무, 위탁계약 해지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허가, 이용료
(안 제8조, 제9조)

라. 위탁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안 제1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함.

-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 수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또한 관리 운영비는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